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6. 7 선고 2021나331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6. 7 선고 2021나33173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14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22. 5. 17.

판결선고 2022. 6. 7.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145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E 사이에 강릉시 D 전 407㎡에 관하여 2019. 6.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6. 10. 접수 제215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G'을 'F'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조영인, 판사 임세영